## 낙태죄 ABORTION

### 관계법령

- 형법 심각함gg 제269조) (낙태)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 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7.]

아니하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

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 헌법재판소 결정 및 낙태죄의 위헌성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헌법재판소 결정

- 2012.8.23.자2010헌바402 결정: 결론은 합헌(정족수 부족) •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 태아의 독자적 생존 여부를 낙태죄 허용의 기준으로 삼을수 없음
  - 임부의 자기결정권(사익)이 태아의 생명권(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없음.

•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

- 인간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일률 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사문화된 현실도 고려 - 임신 12주를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

### 낙태죄의 현실

- 2005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 한해 낙태시술 추정 건수 약 34만 2천여건 : 통계 주관기관마다 차이(최대 200만건까지 추정) 그중 14만 3천 여건이 미혼 여성의 낙태(약 42%)
    - 나머지 기혼 여성 낙태도 단산 혹은 터울 조절이 이유(약 75%)
  - 낙태시술 추정 건수 중 4.4%정도만 관련 법령상 합법 조건 충족
  - 불법 낙태의 약 90%는 사회 경제적 사유
  - 낙태시술 처정 건수 중 96.3%가 임신 12주 미만에 • 낙태죄를 처발해도 낙태를 감행할 것이라는 의견 84.6%
- 낙태 실형 판결시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휘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 소송에 걸리면 무조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는 의사면회취소 사유가 됨